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- 61호

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조건을 변경하였기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23일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1. 상 호 :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

2. 조건 변경

가. 2012.7.18. 금융투자업 인가시 1-32-1(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) 및 2-32-1(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)의 인가업무 단위와 관련하여 부과된 조건

○ 1-32-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

(1)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

(2)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(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 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)

○ 2-32-1의 경우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

나. 변경 내용

- 1-32-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

- (1)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

- (2)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

- 2-32-1의 경우 해외 본·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(디비에스 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)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·이자율·상품·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

3. 변경일 : 2016. 2. 17.